

특례법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기준을 손해배상을 산정기준으로 삼을수 없다.

&nbsp; <P class=HStyle0>건물의 교환가치는&nbsp; 그 구조, 위치 ,면적, 용도 ,경과기간 등을 참작하여 산출한 감정가격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라 할것이고, 공공용지의 취득 및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들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의&nbsp; 공법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위 특례법에 의한 보상금을 산정기준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으로 삼을수 없다.</P> <P class=HStyle0>(대법원 1994.10.14 선고 94다3964 판결)</P>